

사회복지법인 송원 이사회회의록

- 1) 회의 통보일자 : 2021년 11월 02일
- 2) 회의 개최일시 : 2021년 11월 10일 11:00 ~
- 3) 회의 개최장소 : 다자간 영상회의
- 4) 회의 종류 : 임시 이사회
- 5) 회의 참석인원 : 대표이사 : 이성근
이 사 : 장회원, 남정숙, 조홍래
- 6) 안 건 : 1) 당 법인 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사임 및 연임 승인에 관한 건
2) 당 법인 외부추천감사 선임에 관한 건

== 토의 내용 ==

대표이사 : (인사말생략) 이사 칠분의 사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하고 토의에 들어가다.

- ▶ 안건) 1) 당 법인 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사임 및 연임 승인에 관한 건
2) 당 법인 외추추천감사 선임에 관한 건

대표이사 이성근 : (안건상정에 이어 의안 설명에 들어가다.)

당 법인의 감사 송철우, 정정시 임기가 2021년 11월 29일부로 만료 됩니다. 송철우 감사님의 연임과 정정시 감사님의 사임, 외부추천 감사 선임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송철우 감사님 연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 남정숙 : 먼저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네. 현재 송철우 감사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법인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저희 법인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감사님께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 남정숙 : 송철우 감사님께서서는 세무 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여 법인 감사직을 연임해 주시면 법인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 장회원 : 남정숙 이사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 사 조흥래 : 장회원 이사님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이 사 일 동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다음은 외부추천감사 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함)의 직전 3회계년도의 세입 금액(기본재산 및 출연금 제외)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사람(전문가 감사)으로 선임해야 한다.(법 제1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당 법인은 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외부추천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당 법인 주무관청인 동래구청에 외부추천감사의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을 받았는데, 당 법인 감사이신 정정시 감사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당 법인 외부추천감사에 정정시 감사님을 선임 하는데 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 남정숙 : 외부추천감사를 추천 받았는데 당 법인 감사이신 정정시 감사님을 추천 받았다면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 법인을 위해 힘써주신 분께서 다시 한 번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당법인 감사직을 사임하시고 외부추천감사로 저희 법인에 남아 주시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 장회원 : 남정숙 이사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 사 조흥래 : 재청합니다.

이 사 일 동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네. 여러분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정시 감사님의 회계분야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사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다면 송철우 감사님을 임기 2021년 11월 30일 ~ 2023년 11월29일까지 2년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정정시 감사님을 임기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9까지 외부추천감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회 원 : 동의 합니다.

이 사 일 동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본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안통과를 선언하고, 폐회를 구하다.

이 사 일 동 : 이에 동의하다.

대 표 이 사 : 참석이사 전원 이사회회의록에 기명 인감날인하다.

2021. 11. 10. 11:00

사회복지법인 송 원

대표이사 : 이성근 (인)

이 사 : 장 리 외 (인)

박정숙 (인)

조홍래 (인)